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1604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4. 25.

판결 선고 2024. 5. 30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3. 8. 17.부터 가.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1 내지 3호층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그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'이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9. 17.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,000,000원, 월차임을 270,000원, 기간을 2021. 9.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피고는 2023년 봄 경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2023. 9. 12. 한 달 후 이사에정임을 통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500,000원을 지급한 사실, 그러나 피고는 이사를 가지 않고 2023. 9. 17.부터 월세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, 2023. 9. 17.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7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정은영

별지